

## 핀란드·노르웨이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

김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 I 머리말

2019년 7월 2일 현재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sup>1)</sup>의 비준국은 117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에 접근·이용하여 이익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상의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이행체계에 관하여 숙지해야 하듯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개별 당사국의 ABS 법제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보다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통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의 규율이 하나의 국제적 대세가 되고 있다. 이처럼 2014년 10월 12일 국제적으로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은 꾸준히 증가하여, 처음에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에 해당되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근래에는 ‘이용국’의 입장에 해당되는 선진국들의 비준도 증가하고 있다.<sup>2)</sup> 아래에서 살펴볼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선진국에 해당하면서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하여 상당한 규정을 두고 규율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일면 제공국의 입장으로서 관련 이익 공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2 ‘이용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 뒤 1년 후 발효를 조건으로 유전자원법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였고, 2017년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2018년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동법이 발효되었다.

## II 핀란드의 ABS 법제 분석

### 1.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지정

핀란드는 2011년 6월 23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후, 2016년 6월 3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고, 2016년 9월 1일 당사국이 되었다.

핀란드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상 ① 국가연락기관으로 자연환경센터 핀란드환경연구원(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Natural Environment Centre)을 지정하였고, ② 국가책임기관으로 핀란드 자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Institute Finland)와 자연환경센터(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Natural Environment Centre)를 지정하였으며, ③ 점검기관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국가책임기관이 또한 점검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 2.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핀란드는 북부유럽에 위치하는 국가로 핀란드 정부는 2012년 12월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2012-2020'(National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핀란드는 2020년까지 핀란드의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하고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유익한 상태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정부 부처는 시민사회, 상업적 이해관계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또한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원주민공동체'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및 이들의 관행을 존중하게 되었다. 특히 핀란드 북부지역(북극지역) 대부분은 사미족(Sami, 또는 Saami people)의 주둔지(Homeland)로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사미족 원주민공동체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북부지역의 자연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여 보다 나은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하여 이 지역 위협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핀란드 범 정부적 차원에서는 부문별책임원칙(principle of sectoral responsibility)을 도입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실현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 각 부분에서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해영향을 감소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진다. 이로서 농업, 임업, 교통, 통신, 교육 등의 각 정부 부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부문의 종사자들의 인력적 측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이익 공유'를 실현하게 됨으로서 조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무엇보다 핀란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그리고 EU의 ABS 규칙 511/2014/EU<sup>3)</sup> 및 2015/1866/

3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OJ 2014 L150/59).

EU<sup>4)</sup>을 이행해야 하는 EU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법률’(핀란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제정하였다.

표 1 | 핀란드 ABS 법의 구조

조문 번호	조문 제목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	용어 정의
제5조	이용자의 통보의무
제6조	사미족의 데이터베이스
제7조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제8조	사미족의 권리 약화 금지
제9조	일반적인 운영 및 감독
제10조	국가연락기관
제11조	국가책임기관
제12조	국가책임기관 기능
제13조	정보획득 및 조사수행 권한
제14조	행정적 지원
제15조	조건적 벌금, 집행준수, 집행정지 통보
제16조	항소
제17조	유전자원 규범 위반
제18조	발효

4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OJ 2015 L275/4-19).

### 3. PIC 관련 내용

핀란드 ABS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이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칙의 이행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1항은 적용 대상으로 외국에서 '수입된' 유전자원 및 관련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의 전통지식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제2조 3항은 다른 당사국들과 유사하게 인간유전자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sup>

핀란드 ABS법 제5조는 '이용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 및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을 핀란드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국가책임기관에 수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sup>7)</sup> 이때 이용자가 '통지할 내용'은 EU ABS 규칙 511/2014/EU 제4조 3항<sup>8)</sup>에 따른다. 만약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핀란드 ABS법 제15조에 따라 벌금(fine), 이행의무준수강제(enforced compliance), 강제정지(enforced suspension)가 된다.<sup>9)</sup>

핀란드 ABS법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특별히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조에 의하면 사미의회(Saami Parliament)는 연구개발(R&D)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미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Database)화 하여 관리하고, 이러한 DB에 포함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을 국가책임기관에 통지해야 한다.<sup>10)</sup> 그리고 제7조 1항에 따라 DB에 대한 '접근권'(right to access)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를 국가책임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관련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이용 목적과 이용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sup>11)</sup> 이후에 국가책임기관은 사미의회에 이 신청서를 통지하고, 제7조 2항에 따라 DB의 전통지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게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이 '사미의회'와 '이용자' 간의 MAT를 승인해야 한다.<sup>12)</sup> 이처럼 핀란드 ABS법은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 및 이익 공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4. MAT 관련 내용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는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핀란드 ABS법 제4조 1항에 따라 사미문화에서 발전 및 유지되어 전해 내려온 지식, 기술 및 역량으로 'MAT에 기재된' 내용을 의미하는데,<sup>13)</sup> 이는 EU

5 핀란드 ABS법 제2조 1항.

6 핀란드 ABS법 제2조 3항.

7 핀란드 ABS법 제5조.

8 EU ABS 규칙 511/2014/EU 제4조 3항에 따라 이용자는 자신의 다음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으로 국제적 재료확인서, 국제적 재료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및 관련 문서,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의 접근 날짜 및 장소, 유전자원 또는 이용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설명, 직접 취득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근원, 접근의 의무와 권리를 포함하는 이익 공유 및 사후활용과 상업화에 관련된 의무의 존재 유무, 해당 기밀사항 접근 허가증, 해당 이익 공유의 합의를 포함하는 상호합의조건(MAT)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9 핀란드 ABS법 제15조.

10 핀란드 ABS법 제6조.

11 핀란드 ABS법 제7조 1항.

12 핀란드 ABS법 제7조 2항.

13 핀란드 ABS법 제4조 1항.

ABS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의 MAT에 관한 정의 규정과 일치한다.<sup>14)</sup> 즉 나고야의정서 제7조는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PIC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MAT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sup>15)</sup>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런데 EU ABS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 그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MAT에 전통지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IP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sup>16)</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를 ‘MAT에 관련 전통지식으로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에만 한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때 유럽의회 수정(안) 제3조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즉 MAT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라고 기술된 것과 상관없이 IP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은 모두 PIC과 MAT 그리고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미의회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미족의 문화, 동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의 지위를 발전시키는 데 활용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공유를 요구할 수 있다. 즉 핀란드 ABS법 제7조 3항에 따라 핀란드 국가책임기관은 필요한 경우 MAT에 대하여 사미의회와 협상해야 한다.<sup>17)</sup> 그리고 핀란드 ABS법 제8조에 따라 DB상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의 이용’으로 인해 사미족의 IPLC로서의 문화적 발전과 전통적인 삶을 지속할 권리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된다.<sup>18)</sup>

### III 노르웨이의 ABS 법제 분석

#### 1.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지정

노르웨이는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5월 11일에 서명한 후, 2013년 10월 1일에 비준하였으며, 2014년 10월 12일에 국내적으로 발효되었다.

노르웨이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상 ① 국가연락기관으로 기후환경부(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를 지정하였고, ② 국가책임기관으로 기후환경부(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가 또한 역할을 수행하며, ③ 점검기관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다.

14 EU ABS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

15 나고야의정서 제7조

16 EU ABS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

17 핀란드 ABS법 제7조 3항.

18 핀란드 ABS법 제8조.

## 2. ABS 관련 법령 채택 개요

노르웨이 ABS 법제의 특징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중점을 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ABS 관련 법령들로는 해양자원법(Marine Resources Act, 2009), 자연 다양성 법 제7장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Nature Diversity Act Chapter VII Access to genetic material, 2009),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2013),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규칙(Forskrift om beskyttelse av tradisjonell kunnskap knyttet til genetisk materiale, Regulat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material, 2017: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한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규칙이 나고야의정서의 국제적 발효 후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은 ‘생물학적, 지질학적, 경관(풍경)적 다양성의 관리’에 관한 2009년 6월 19일의 법률 제100호(Lov om forvaltning av naturens mangfold (naturmangfoldloven): Act of 19 June 2009 No. 100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ge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제61a조에 따라 채택되었고, 기후환경부(Klima- og miljødepartementet,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가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하였다.

| 표 2 |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의 구조

조문 번호	조문 제목
제1조	목적
제2조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다른 이들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동의(consent) 요건
제3조	동의 요건의 면제(exemptions)
제4조	‘동의 범위’와 ‘이용 조건’
제5조	제재(sanctions)
제6조	금전적 및 비금전적인 손실(losses)과 피해(injury)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제7조	다른 국가에 있는 토착지역공동체
제8조	발효, 과도 규정

## 3. PIC 관련 내용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은 본 법령의 목적과 관련하여, 제1조에서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P)LC) 내에서 발전되고, 이용되고, 유지되고, 전수되어온 유전물질과 연관된 지식(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 의한 접근(access) 또는 이용(use)과 관련하여 토착지역공동체 이익

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9)</sup>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지식'이란 토착지역 공동체 내에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 동안(세대 간)에 집단적으로 발전되고, 이용되고, 유지되고, 전수되어온 기술(skills), 관습(practices), 학식(learning)을 포함하고 있다.

### (1)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타인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요건

제2조는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다른 이들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동의(consent) 요건 즉 PIC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토착지역공동체의 독특한(unique) 또는 특징적인(characteristic), 또는 그 공동체의 전통적 생활방식(traditional way of life)과 관련된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다른 이들의 '접근과 이용'은 그 토착지역공동체를 대신하여 대표되어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대표로서의 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기관(body)으로부터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requires consent)"고 하고, 또한 "단지 전통지식을 '알아보거나(확인하거나) 조사'할 목적일 때에도 '지식의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0)</sup> 물론, 이 동의 요건은 해당 전통지식을 발전시키고, 이용하고, 유지하고, 전수해온 토착지역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 즉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sup>21)</sup> 이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2) '동의' 요건의 면제(exemptions)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즉 ① 전통지식이 '개인적이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② 전통지식이 '인용(citation)이나 교육(education)의 목적'으로 복사되거나 이용되고, 그 자료(sources)의 기밀정보가 노출되어 밝혀졌을 때(disclosed), ③ 전통지식이 그 지식의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거나 반증'할 목적으로, 그 지식 자체와 관련된 방향의 '연구나 실험적으로 이용'될 때, ④ 전통지식이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ove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해당 토착지역공동체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이용 가능'해져(generally known or available) 왔을 때에는 '동의'가 요구되지 아니 한다.<sup>22)</sup>

## 4. MAT 관련 내용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4조에 의하면, PIC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MAT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의(PIC)는 특정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토착지역공동체가 그 동의가 적용되는 지식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공유의 몫'(reasonable share of the benefits)을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3)</sup>

19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1조.

20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2조, para. 1.

21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2조, para. 2.

22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3조.

23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4조, para. 1.

또한 동법은 IPLC의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통지식은 그 지식을 이용하고, 유지하고, 전수해 온 그 토착지역공동체에 공격적이지 않은(not offensive)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전통지식의 모든 이용자는 그 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에 의해 발전되고, 이용되고, 유지되고, 전수되었다는 것을 ‘인정’(acknowledge)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신고’(declare)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의무를 강조 및 강화하고 있다.<sup>25)</sup>

## 5. 제재(sanctions)

노르웨이의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IPLC의 보호의 측면은 동법 제5조상의 제재 규정을 통하여도 엿볼 수 있다. 즉 위반행위로 여겨지는 특정한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2조와 제4조를 위반하여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얻거나 이용하는 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by a court judgment) 다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금지당할 수 있도록 하여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만약 제4조의 세 번째 단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는,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 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에 의해 발전되었고, 이용되었고, 유지되었고, 전수되어 왔다는 점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도록 홍보 활동을 행할 것을 법원 판결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sup>26)</sup>

## 6. 금전적 및 비금전적인 손실(losses)과 피해(injury)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노르웨이의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와 IPLC의 보호의 측면은 손실 및 피해에 관한 보상 규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① 계획적으로(wilfully,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negligently, 태만하게) 제2조상의 ‘동의 없이’(without consent)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모든 자는 피해를 입은 그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이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reasonable compensation)과, 그 지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further losses)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sup>27)</sup> 그리고 ② 계획적으로(wilfully) 또는 중과실로(through gross negligence) 동법 제4조 두 번째 단락의 [문화적으로] 공격적인 이용([culturally] offensive use)에 대한 금지를 위반한 모든 자는 법원이 판단하여 ‘비금전적인 피해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총액’을 피해를 입은 그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sup>28)</sup>

24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4조, para. 2.

25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4조, para. 3.

26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5조.

27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6조, para. 1.

28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4조, para. 2.

## 7. 다른 국가 IPLC 관련 PIC의 존중

노르웨이는 자국 내 IPLC의 이익 보호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또한 '외국의 IPLC'의 이익 보호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국가에 있는 IPLC에 의해 발전되고, 이용되고, 유지되고, 전수되어온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해당 국가의 법률 하에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본 규정들은 그 전통지식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 8. 발효 및 과도 규정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은 동법 제8조 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며, 동법 규정들은 '동법의 발효 일 이전'에 '접근권'을 얻은 전통지식을 이용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sup>30)</sup>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발효 이후에 접근된 전통지식에 대하여만 규제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 개인이 IPLC의 '동의'를 요구하는 다른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얻은 경우에, 만약 합리적인 보상 총액이 해당 IPLC에게 지불된다면, 그 지식은 이용될 수 있다"<sup>31)</sup>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의 PIC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국내에서 이용한 경우 '사후조치에 의한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융통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 IV 맺음말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 및 IPLC의 보호를 중심으로

먼저, 핀란드 ABS 법은 원칙적으로 동법 제2조 1항에 따라 수입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국으로서 이행법규를 제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으로 핀란드 지역 토착민인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핀란드 ABS 법은 여타 다른 EU국가에 달리 일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ABS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동법 제5조는 일반적으로 핀란드 내로 수입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국가책임기관에 수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법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미족이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PIC과 MAT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미족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정보로서, 제7조 1항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에 이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7조 2항에 따라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이용자와 사미의회 간 체결된 MAT에 근거하여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ABS 법은 사미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K)에 대한 PIC과 MAT의 요건이나 이익 공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미의회와 국가책임기관 간

29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7조.

30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8조, para. 2.

31 노르웨이 ABS 규칙 2017, 제8조, para. 2.

협약에 기초하여 사미의회와 이용자 간에 MAT의 요건 및 이익 공유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32)</sup>

그리고,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은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율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이익의 수혜자가 되는 IPLC’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통지식을 발전시키고, 이용하고, 유지하고, 전수해 온 IPLC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접근과 이용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고 동법에서 다루지는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TK)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제2조는 그러한 전통지식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IPLC로부터의 동의, 즉 PIC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그러한 동의 즉 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MAT이 PIC의 전제 조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접근과 이용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노르웨이의 ABS처럼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을 가진 다른 국가의 전통지식에 있어서 동일하게 접근과 이용을 위한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불소급 적용 및 과도 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 ABS 규칙 2017이 CBD 및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상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외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도 충분히 비중 있게 다루어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규율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2) MAT의 핵심내용은 ‘이익 공유’의 방법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사회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인정된다. 본래 ‘계약자유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약체결의 자유’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또한 체결한다고 할 때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결정의 자유’는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단 성립된 계약의 내용도 자유롭게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체결방식의 자유’는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당사자들은 편의에 따라 서면·구두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박영사, 2018), pp.21-2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박영사, 2013), pp.38-44; 양창수·김재형, 「계약법」(박영사, 2015), pp.13-17 참조.

## 참고자료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박영사, 2013.

김두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박영사, 2018.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박영사, 2015.

Forskrift om beskyttelse av tradisjonell kunnskap knyttet til genetisk materiale, 2017, Norway (Regulation on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material, 2017, Norway).

Laki biologista monimuotoisuutta koskevaan yleissopimukseen liittyvän Nagoyan pöytäkirjan täytäntöönpanosta, 2016, Finland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6, Finland).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April 2014 on compliance measures for users from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Utilization in the Union (OJ 2014 L150/59).

Regulation 2015/1866/EU of 13 October 2015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511/201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register of collections, monitoring user compliance and best practices (OJ 2015 L275/4~19).